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위원회의 옴부즈만 및 법령해석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“금융규제민원포털”을 “정보처리시스템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, 금융위원회 등에 옴부즈만으로 신고된 사항이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으로 요청되었거나 그 결과가 회신된 사항인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금융위원회 등이 종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아목을 삭제한다.

제6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관련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은 자체규제심사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구축·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“정보처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.

제6조제4항 단서 중 “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”를 “위해 필요하다고”로, “아니할 수 있다”를 “않을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”를 “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를 부여한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3조제2항제2호 중 “제11조제3항”을 “제1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”를 “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융규제민원포털”을 “정보처리시스템”으로, “공개하여야”를 “공개해야”로 한다.

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본문 중 “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”를 “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까지에 규정된”을 “제8항까지에서 규정한”으로, “정한다”를 “정하여 고시한다”로 한다.

④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신고 접수기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으로 요청되거나 그 결과를 회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인 경우 해당 신고를 한 금융회사등, 그 밖의 이해관계인(이하 “신고인”이라 한다)에게 그 사유를 밝힌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.

⑤ 신고 접수기관과 ombudsman은 신고인의 인적사항,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”를 “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금융유관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사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아.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자. ~ 파. (생 략)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제6조(자체규제심사위원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자체규제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(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자. ~ 파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자체규제심사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관련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은 자체규제심사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구축·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“정보처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.</u> ----- -----</p>





2. 제11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 금융행정지도: 6개월

3. ~ 4. (생략)  
③ ~ ⑤ (생략)

제17조(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점검 등) ① 금융위원회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 대상 금융규제를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금융규제의 정비 여부 등의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,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옴부즈만) ① ~ ③ (생략)  
<신설>

2. 제11조제4항에 -----  
-----  
---

3. ~ 4. (현행과 같음)  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점검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정보처리시스템 -----  
----- 공개해야 -----  
-----.

제18조(옴부즈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신고 접수기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으로 요청되거나 그 결과를 회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인 경우 해당 신고를 한 금융회사등, 그 밖의 이해

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음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.

제20조(실태평가) ①·③ (생략)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⑨ -----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-----

-----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0조(실태평가) ①·③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않을 -----  
--.